

광주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1나67700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담당변호사 김창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재원

변 론 종 결 2022. 7. 21.

판 결 선 고 2022. 9. 15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9. 28. 선고 2020가단152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들은 연대하여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5. 24.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주위적으로, 피고 D, C는 연대하여 101,5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2. 1.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예비적으로, 피고 D은 3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1. 16.부터 이 사건 2020. 10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- 제1심 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덧붙인다.『따라서,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』
-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의 “항소기간 판결”을 “항소기각 판결”로 고쳐 쓴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유상호, 판사 송인경, 판사 김진만